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한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073호, 2022.12.13. 공포, 2023.6.14. 시행)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임용되고자 할 경우,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연장함.

나.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삭제(안 제53조 삭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제5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3조 (휴직 · 복직권자) 장교의 휴직과 휴직되었던 장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직 <신 설>	제11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삭 제> 부 직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2